

제 14 장 전자상거래

제 14.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다룸으로써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국의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을 그 밖의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에 비해 더 제한적으로 대우하는 효과가 있는 조치

제 14.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 14.3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9장(투자),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되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제 14.4 조

관세

1. 어느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디지털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제 14.5 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자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 14.6 조
종이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4.7 조
개인정보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의 채택 또는 유지, 그리고
 - 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국 경험에 대한 정보의 교환

제 14.8 조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1. 양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위한 국가 인증 및 디지털 인증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4.9 조 협력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 성격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중소기업¹⁾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 나. 자료의 비밀, 소비자의 신뢰, 전자 통신상 보안, 인증, 지적재산권 및 전자정부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것
- 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경 간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라. 민간부문이 행동규범, 모범계약, 지침 및 집행 체계를 채택하도록 장려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제 14.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이란 단독으로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통신을 통해 전달되거나 수행됨을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거나

1) 이 조의 목적상, 페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란 페루 국내 법령에 정의된 미소(微小)기업을 포함한다.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각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 무역이란 단독으로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무역을 말한다.